
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4. 2. 15.>

항목	측정 일시 (시간)	측정 지점 (동·호수)	거실 방향	폼알데 하이드	벤젠	톨루엔	에틸 벤젠	자일렌	스티렌	라돈	
권고기준	-	-	-	210 이하	30 이하	1,000 이하	360 이하	700 이하	300 이하	148 이하	
8지점	25.01.07 (13:00)	107-1901	남동향	5.62	2.44	48.16	53.00	111.93	6.93	밀폐	100
										환기	30.96
										-	
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○											
9지점	25.01.07 (13:00)	108-1702	남서향	8.46	2.04	166.22	106.73	230.17	13.98	밀폐	96.8
										환기	54.25
										-	
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○											
10지점	25.01.07 (13:00)	108-3102	남서향	8.40	3.88	362.23	230.70	438.48	25.95	밀폐	102.9
										환기	47.38
										-	
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○											
11지점	25.01.07 (13:00)	109-2102	남서향	6.30	2.23	105.52	47.01	93.96	6.32	밀폐	109.29
										환기	40.75
										-	
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○											
12지점	25.01.07 (13:00)	110-303	남동향	11.59	2.14	296.18	163.46	321.73	17.76	밀폐	101.8
										환기	49.17
										-	
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○											
평균동남				7.08	2.23	195.66	77.11	175.81	10.75	밀폐	109.7
										환기	42.06
										-	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(공고)합니다.

2025년 01월 20일

제출자 DL이앤씨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
현장대리인 이 용 주 (서명 또는 인)



안양시장 귀하

첨부서류	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